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가.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나.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본인 또는 그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의 내방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등 욕구조사)

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수급자

(2)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할 수 없다.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4) 방문간호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가정간호화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 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사정회의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와 제공횟수, 서비스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가) 적정급여 제공 원칙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문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의 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6)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가.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X본인부담율)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 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 휴일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다.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 액

가.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 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수급자는 매 월 이용료를 기관의 통장 (대구은행 504-10-2685-02-5)으로 납부한다.

다. 치매특별등급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단, 특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실 재료비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라.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바.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사.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가 있다.

7.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서비스 제공자는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해당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마.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바.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사.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아-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년 1회 이수 의무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학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
아-2. 서비스 제공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의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자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근거 마련.
노인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관련 연1회 이상 점검 · 확인 의무화 및 취업제한 명령 위반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자.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차. 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1)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8.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무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의무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마.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9. 수급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센터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서비스 품질보장

가.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나.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 부당청구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11. 계약의 해지

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야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9) 센터 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10)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1)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12)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다.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가' 에 해당하는)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기관' 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라.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나' 에 해당하는)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3) 표준약관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나.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료 납부 등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 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0% 부담	0% 부담
	경감수급자	6% 부담	6% 부담	6% 부담
		9% 부담	9% 부담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15% 부담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 (원)**	**구 분**	**금액 (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첨부 3]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60분이상시)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47,670원	76,340원	84,670원

제10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1]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회 3~4등급 수급자도 210분이상 연속 급여제공 가능하다.
-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30분이상부터 180분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10분 내지 240분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1회 산정할 수 있으며, 30분이상부터 180분 서비스와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비용을 산정한다.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및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22조 원거리교통비용에 따른다.

3. 방문목욕 제공시 비용 산정

- 우리 기관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급여만을 제공하며, 차량을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수급자의 경우 타기관으로 의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연계한다.
- 방문목욕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과 산정할 수 있다.

제11조 (영업시간)

사업실시 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경북 경산시, 경북 고령군 및 경북 일부지역	
영업일 (영업시간)	평 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토요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와 운영관리]

제23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변경)

서비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을 적용한다.
우리 기관은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임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4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2.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단,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3.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병원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4.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단,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5.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자극활동. 인지정서지원활동

[방문목욕]

1. 방문목욕 :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제25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가한다.

2.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 (내과, 이비인후과 등) 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어르신의 병원진료 (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3.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2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요양중에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